

※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순위별 자격 요건

일반공급 1순위	1.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가능(1인 1청약) - 거제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3.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가능
	4. 재당첨 제한 無 -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
	5. 당첨자 선정 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전용면적 85㎡초과 - 추첨제 100%
일반공급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무관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민영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자는 2년간 가점제 대상자에서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에 해당할 경우 청약가능. 단,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에만 청약가능.  
 ※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주택건설지역(거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안내

구분	거제시/경상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거제 한신더휴
전용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84㎡
전용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 타입 (84㎡, 99㎡)
전용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청약신청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22.)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li> </ul>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 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s://www.applyhome.co.kr">https://www.applyhome.co.kr</a>)에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요망.</li> <li>-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li>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li> <li>-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li> <li>-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li> </ol> </li> </ul>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p> <p>■ 무주택기간 산정 예시</p>	<p>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32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거 주택소유여부</th> <th>30세 이전 결혼여부</th> <th>무주택기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무경력자 (배우자 포함)</td> <td>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td> <td>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td> <td>만 30세가 된 날~입주자모집공고일</td> </tr> <tr> <td>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td> <td>혼인신고일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td> <td>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td> </tr> <tr> <td rowspan="4">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유경력자 (배우자 포함)</td> <td rowspan="2">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td> <td>만 30세 무주택자 된 날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td> <td rowspan="2">만 30세가 된 날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td> </tr> <tr> <td>무주택자 된 날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td> </tr> <tr> <td rowspan="2">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td> <td>혼인신고일 무주택자 된 날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td> <td rowspan="2">혼인신고일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td> </tr> <tr> <td>무주택자된 날 혼인신고일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td> </tr> </tbody> </table>	과거 주택소유여부	30세 이전 결혼여부	무주택기간	비고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무경력자 (배우자 포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	만 30세가 된 날~입주자모집공고일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	혼인신고일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유경력자 (배우자 포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	만 30세 무주택자 된 날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	만 30세가 된 날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무주택자 된 날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	혼인신고일 무주택자 된 날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	혼인신고일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자된 날 혼인신고일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
과거 주택소유여부	30세 이전 결혼여부	무주택기간	비고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무경력자 (배우자 포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	만 30세가 된 날~입주자모집공고일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	혼인신고일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유경력자 (배우자 포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	만 30세 무주택자 된 날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	만 30세가 된 날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무주택자 된 날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	혼인신고일 무주택자 된 날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	혼인신고일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자된 날 혼인신고일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																			
<p>2)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함.</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li>※ 2019.11.01.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li> </ul> <p>4)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ul> <p>5)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p>■ 부양가족수 산정 사례 ※ 부양가족 산정 시 청약자 본인은 제외</p> <table border="1"> <thead> <tr> <th>주택소유</th> <th>세대주</th> <th>주민등록분리</th> </tr> </thead> <tbody> <tr> <td>① 부양가족: 3명(20점) 배우자, 자녀 2명</td> <td>② 부양가족: 5명(30점) 부, 모, 배우자, 자녀 2명</td> <td>③ 부양가족: 3명(20점) 배우자, 자녀 2명</td> </tr> <tr> <td>① 부양가족: 3명(20점) 배우자, 자녀 2명</td> <td>② 부양가족: 3명(20점) 부, 모, 배우자</td> <td>③ 부양가족: 7명(20점) 부, 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2명</td> </tr> <tr> <td>① 부양가족: 7명(35점) 부, 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2명</td> <td>② 부양가족: 5명(30점)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2명</td> <td>③ 부양가족: 5명(30점) 부, 모, 배우자, 자녀 2명</td> </tr> </tbody> </table>	주택소유	세대주	주민등록분리	① 부양가족: 3명(20점) 배우자, 자녀 2명	② 부양가족: 5명(30점) 부, 모, 배우자, 자녀 2명	③ 부양가족: 3명(20점) 배우자, 자녀 2명	① 부양가족: 3명(20점) 배우자, 자녀 2명	② 부양가족: 3명(20점) 부, 모, 배우자	③ 부양가족: 7명(20점) 부, 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2명	① 부양가족: 7명(35점) 부, 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2명	② 부양가족: 5명(30점)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2명	③ 부양가족: 5명(30점) 부, 모, 배우자, 자녀 2명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주택소유	세대주	주민등록분리																			
① 부양가족: 3명(20점) 배우자, 자녀 2명	② 부양가족: 5명(30점) 부, 모, 배우자, 자녀 2명	③ 부양가족: 3명(20점) 배우자, 자녀 2명																			
① 부양가족: 3명(20점) 배우자, 자녀 2명	② 부양가족: 3명(20점) 부, 모, 배우자	③ 부양가족: 7명(20점) 부, 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2명																			
① 부양가족: 7명(35점) 부, 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2명	② 부양가족: 5명(30점)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2명	③ 부양가족: 5명(30점) 부, 모, 배우자, 자녀 2명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p>	<p>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